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70호 2024년 11월 28일(목)

## 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 ..... 2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 4

발행 : 시 민 소 통 과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(변경)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

## 속 초 시 장

- 가. 공 고 명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- 나. 도로위치: 속초시 도문동 525-3번지 외 1필지
- 다. 공고방법: 속초시공보,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
- 라. 공고기간: 2024. 11. 28. ~ 2024. 12. 12. (14일간)
- 마. 도로 지정 조서

소재지	지 번	지 목	변경 전		변경 후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(신고)번호 (허가(신고)일)	비 고
			면적(㎡)		면적(㎡)				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525-3*	전	334	60	58	58	이○호	속초시 도문동 525-2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2023-건축과-신축신고-15 (2023. 5. 13.)	건축주: 정○연
	525-4	전	-	-	31	31			

\*) 최초 도로 지정 당시 도문동 525-2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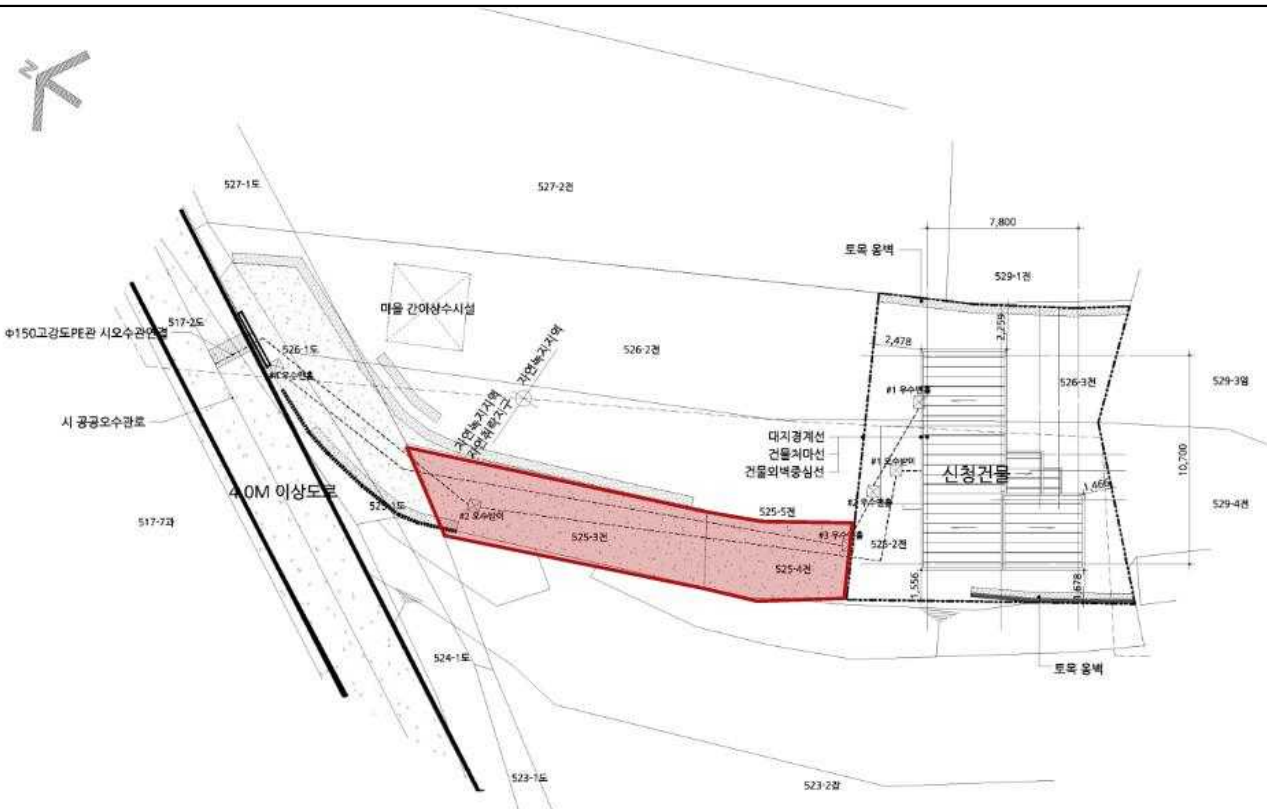
- 바. 관계도서: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- 사. 문의사항: 건축과 건축허가팀(☎033-639-2774)

## 위치도 및 현황도



위치도

축척 NONE



현황도

축척 NONE

##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2. 개정이유

장사시설 사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등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봉안시설 사용원칙 개정 및 신설(안 제5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)
- 나. 봉안시설 반환자 재사용 금지 조항 신설(안 제7조제2항)
- 다.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7호서식 서식 수정
- 바.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함.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12월 19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경로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 제출할 곳: 우24826 /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
경로시설팀(전화: 033-639-2673, FAX: 033-639-2739)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(전화: 033-639-2673)으로  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화장신고서 :”를 “화장신고서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(봉안당,봉안묘) 사용신청서 :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신청서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(봉안당,봉안묘) 사용권 승계신청서 :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권 승계신청서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(봉안당,봉안묘) 사용료 반환신청서 :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료 반환신청서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(봉안당,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: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신청서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확인서 :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확인서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, “유골인도신청서 :”를 “유골인도신청서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치금수거대장 :”을 “치금수거대장: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수거대장 :”을 “수거대장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사용신청서 :”를 “사용신청서:”로 한다.

### 2.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신청서: 별지 제2호서식

제3조제1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, 관리비를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가루로 만든 것이어야”를 “분골하여야”로 한다.

② 부부단은 배우자(사실혼 포함)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, 1인의 유골을 우선하여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부부단에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,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.

④ 사용이 끝난 공설장사시설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조에 의해 반환된 경우 1년간은 봉안시설 사용을 금지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 세외수입”을 “속초시 세외수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조경 및 축대관리,”를 “조경, 축대관리 및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”를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6조”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화장”을 “이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”를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0조”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화장이”를 “승계가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제2항”을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3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화장”을 “반환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”을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8조제1항 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화장”을 “연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앞면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1항”을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(봉안당,봉안묘)”를 “(봉안당, 봉안묘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속초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제2항”을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3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기호(○) 중 “화장이”를 “사용해지 및 유골인도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사용신고 등) ① 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제 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사용자” 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화장신고서</u> : 별지 제1호서식</li> <li>2. 장사시설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신청서</u> : 별지 제2호서식</li> <li>3. 장사시설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권 승계신청서</u> : 별지 제3호서식</li> <li>4. 장사시설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료 반환신청서</u> : 별지 제4호서식</li> <li>5. 장사시설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기간 연장신청서</u> : 별지 제5호서식</li> <li>6. 장사시설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기간 연장확인서</u> : 별지</li> </ol>	<p>제2조(사용신고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화장신고서</u>: -----</li> <li>2. -----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신청서</u>: -----</li> <li>3. -----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권</u> <u>승계신청서</u>: -----</li> <li>4. -----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료</u> <u>반환신청서</u>: -----</li> <li>5. -----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기간</u> <u>연장신청서</u>: -----</li> <li>6. -----(<u>봉안당, 봉안묘</u>) <u>사용기간</u> <u>연장확인서</u>: -----</li> </ol>

제6호서식

- 7.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 
사용해지 및 유골인도신청서  
: 별지 제7호서식
- 8. 치금수거대장 : 별지 제8호  
서식
- 9.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: 별  
지 제9호서식
- 10. 산골시설(유택동산) 사용  
신청서 : 별지 제10호서식  
<호 신설 2020.7.31.>

제3조(사용료 등 반환)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봉안시설의 사용원칙) ① (생략)

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

-----

- 7. -----(봉안당, 봉안묘)  
----- 유골인도신청서:  
-----
- 8. 치금수거대장:  
-----
- 9. ----- 수거대장:  
-----
- 10. ----- 사용신청서  
----- :  
-----  
-----

제3조(사용료 등 반환) ① -----  
-----  
----- 사용료, 관리비를(이하 “사용료 등” 이라 한다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봉안시설의 사용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부부단은 배우자(사실혼 포함)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, 1인의 유골을 우선하여

부부단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,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7조(사용제한) (생 략)

<신 설>

제8조(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

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부부단에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,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.

④ 사용이 끝난 공설장사시설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⑤ -----  
----- 분골하여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
제7조(사용제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3조에 의해 반환된 경우 1년간은 봉안시설 사용을 금지한다.

제8조(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

절차 등)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인체보철물 중 치금혼합물은 화장시설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.

② (생략)

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리범위)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별초, 조경 및 축대관리, 배수로 관리, 봉안시설 관리

절차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속초시 세외수입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-----.

제9조(관리범위)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 조경, 축대관리 및-----

# 【별지 제1호서식】

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5. 3.>

## 시신·유골 [ ] 매장 신고서 [ ] 화장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-	
	주소			
	사망장소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. . .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분묘설치 연월일	. . .	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
	주소			전화번호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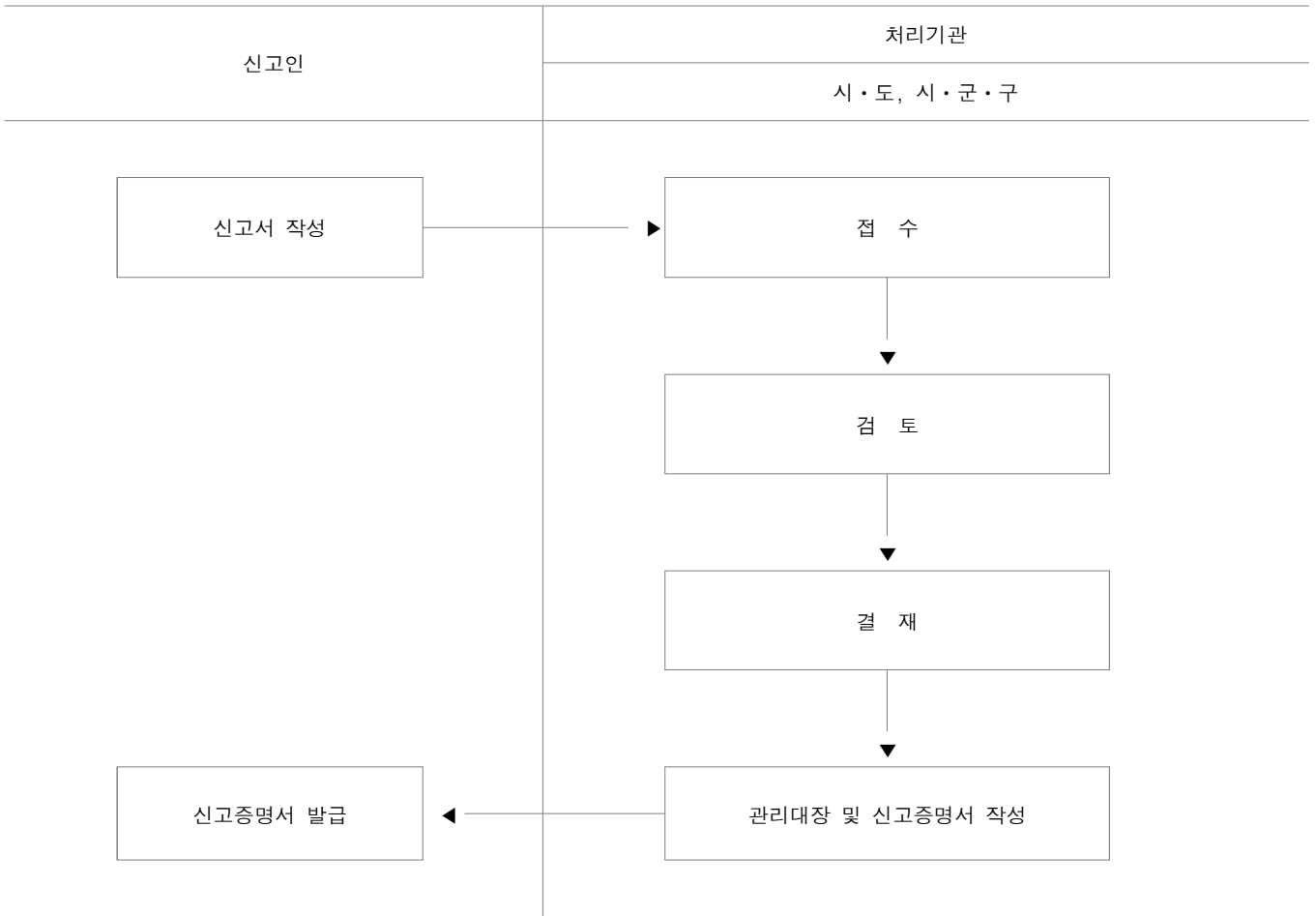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읍·면·동장의 확인서(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

제 호				
<h2>시신·유골 [ ] 매장 신고증명서 [ ] 화장</h2>				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-	
	주소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. . .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분묘설치 연월일	. . .	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
	주소			전화번호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속 초 시 장				관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

##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권 승계신청서

사망자	성명		사망일자	
	봉안일자		봉안당 안치번호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사망자와의 관계			
	전사용자와의 관계			
	승계사유			
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특이사항				
<p>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속초시장 귀하</b></p>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및 제15조) §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자 관리</li> <li>○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</li> <li>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 만료일까지 이용되며, 신청서는 10년까지 보관되고, 10년 경과 후 폐기됩니다.</li> <li>○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승계가 불가합니다.</li> </ul> <p>※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·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			
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		
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		
<p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의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				
구비서류	○ 승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



##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료 반환신청서
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사망장소	
	사망일자		사망원인	
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사망자와의 관계	

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봉안일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)
기 납부한사용료	
반환사유	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월    일

사용 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속초시장 귀하

**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및 제15조) §**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자 관리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 만료일까지 이용되며, 신청서는 10년까지 보관되고, 10년 경과 후 폐기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반환이 불가합니다.  
 ※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·제공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
----------------------	---

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년    월    일

동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##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신청서
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사망일자		봉안당 안치번호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사망자와의 관계	
사용기간 연장	1 회		2 회	
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특이사항				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용 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**속초시장 귀하**

**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및 제15조) §**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자 관리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만료일까지 이용되며, 신청서는 10년까지 보관되고, 10년 경과 후 폐기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.  
 ※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·제공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      동의함     동의 안함

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      동의함     동의 안함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동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##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기간 연장확인서

사망자	성 명		사망일자	
	봉안일자		봉 안 당 안치번호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사망자와의 관계	
사용기간 연 장	1 회		2 회	
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특이사항				
<p>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속      초      시      장</p>				

## 장사시설(봉안당, 봉안묘)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 신청서
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사망일자		봉안일자	
	봉안기간		봉안당 안치번호	
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사망자와의 관계	
	해지사유			
	인수일자			

특이사항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용 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**속초시장 귀하**

**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및 제15조) §**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장사시설 사용해지 등 신청자 관리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장사시설 사용해지 등 완료일까지 이용되며, 신청서는 10년까지 보관되고, 10년경과 후 폐기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가 불가합니다.  
 ※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·제공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
----------------------	---

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함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년 월 일

동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